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8. 11 선고 2014가단549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나7773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8. 11 선고 2014가단5492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 선고 2015. 8.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대 407m²를 인도하고,

나. 정읍시 D 전 1,808m²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4, 5, 6, 30, 29, 28, 27, 2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0m² 지상에 식재된 녹차, 철쭉, 동백나무,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50, 5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 4m² 지상에 식재된 녹차, 같은 감정도 표시 18, 45, 44,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라) 부분 59m² 지상에 식재된 동백나무를 각 수거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m² 지상 건물(산신각), 같은 감정도 표시 42, 37, 38, 39, 40, 41,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마) 부분

24m² 지상 건물(요사채), 같은 감정도 표시 43, 13, 1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m² 지상 건물(대웅전)을 각 철거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33, 32, 31, 10, 11, 12, 36, 35, 34,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사) 부분 159m² 지상 솟대 · 녹차 · 철쭉을 각 철거 및 수거하고, 정읍시 D 전 1,808m²를 인도하고,

다. 정읍시 E 임야 46,810m²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14, 15, 16, 17, 18, 19, 20,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1 부분 107m² 지상에 식재된 동백나무를 수거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1 부분 76m² 지상 건물(대웅전),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아) 부분 11m² 지상 건물(소법당),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자) 부분 10m² 지상 건물(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위 선내 (라)-1 부분 107m², 선내 (바)-1 부분 76m², 선내(아) 부분 11m², 선내(자) 부분 10m²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정읍시 C 대 407m², 2014. 1. 17. D 전 1,808m², 2014. 1. 20. E 임야 46,810m²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정읍시 D 전 1,808㎡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선내(가) 부분 140㎡ 지상에 식재된 녹차, 철쭉, 동백나무, 선내(나) 부분 4㎡ 지상에 식재된 녹차, 선내(라) 부분 59㎡ 지상에 식재된 동백나무, 선내 (다) 부분 9㎡ 지상 건물(산신각), 선내 (마) 부분 24㎡ 지상 건물(요사채), 선내(바) 부분 2㎡ 지상 건물(대웅전), 선내 (사) 부분 159㎡ 지상 솟대·녹차·철쭉, 정읍시 E 임야 46,810㎡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선내 (라)-1 부분 107㎡ 지상에 식재된 동백나무, 선내 (바)-1 부분 76㎡ 지상 건물(대웅전), 선내 (아) 부분 11㎡ 지상 건물(소법당), 선내 (자)부분 10㎡ 지상 건물(화장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또한 정읍시 C 대 407㎡, D 전 1,808㎡ 전부를 점유하고 있고, E 임야 46,810㎡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선내(라)-1 부분 107㎡, 선내 (바)-1 부분 76㎡, 선내(아) 부분 11㎡, 선내 (자) 부분 10㎡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감정인 F의 각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정읍시 C 대 407㎡, D 전 1,808㎡, E 임야 46,810㎡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선내 (라)-1 부분 107㎡, 선내 (바)-1 부분 76㎡, 선내 (아) 부분 11㎡, 선내 (자) 부분 10㎡를 각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정읍시 D 전 1,808㎡ 지상에 설치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녹차, 철쭉, 동백나무, 건물(산신각), 건물(요사채), 건물(대웅전), 솟대, 원고 소유의 정읍시 E 임야 46,810㎡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동백나무, 건물(대웅전), 건물(소법당), 건물(화장실)을 각 수거 내지 철거하고, 정읍시 C 대 407㎡, D 전 1,808㎡, E 임야 46,810㎡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선내(라)-1 부분 107㎡, 선내 (바)-1 부분 76㎡, 선내 (아) 부분 11㎡, 선내 (자) 부분 1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 등을 정당하게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유의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유의 건물 등에 관하여 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정훈

별지